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이상휘・우재준・김정재

고동진 • 임이자 • 최형두

구자근 · 서일준 · 이헌승

김태호 · 이종배 · 박성훈

정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